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FAQ

1. 사업 개요 및 지원 방법

Q. 이번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 활력 제고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Q. 사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모집기간 : 2026. 6. 12.(금) ~ 6. 18.(목)
- 참여기업 선정 : 7월
- 일경험 기간 : 7월 ~ 11월 (5개월)
- 결과보고·성과평가 : 12월

Q. 지원 방법 및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공고에 따라 해당 운영기관에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
asanymca2026@naver.com(아산YMCA, 041-546-9877)
- 남부권(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
cncse2604@naver.com(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041-408-7000)

Q.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NO	제출 서류	서식	필수
1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서식1	필수 제출
2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2	
3	참여기업 서약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3개월 이내	
7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설립·지정 증빙서류		

8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텍스 발급분	
9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2025.12.1.~2026.5.3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0	가점 증빙서류	(붙임1) 심사기준 참고	해당 시

2. 참여기업 자격 및 요건

Q. 어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나요?

- 마을기업(「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름)
-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 기준일: 2026. 5. 31.

Q.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등)

Q. 사회적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마을기업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구분	참여 여부
마을기업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가능
협동조합이면서 인증 사회적기업인 경우	불가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인증 사회적기업인 경우	불가

Q. 참여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2.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3.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이 확인될 것

(사업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협약서, 공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Q.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Q.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은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3.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자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제한)
6.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24년~'25년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7.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절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사업 참여기간 중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Q. 기업당 몇 명의 청년을 배정받을 수 있나요?

참여기업은 최대 4명까지 참여청년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일경험 유형

Q. 일경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형	내용
취업형 인턴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일자리창조형 인턴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Q.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신규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 ◆ (창업지원 조직)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예: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 ◆ (신규 직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하는 것

유형	기본 직무	(예시) 신규 직무
돌봄	요양, 방문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
주거	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
로컬푸드	도시락, 밀키등 제공	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

- **창업지원 조직:**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
(예: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Q. 일자리창조형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나요?

운영계획서 내 '직무개발 아이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닌 **실제 수행 가능한 활동**으로 작성해야 하며, 참여청년이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4. 지원 내용

Q. 지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항목	지원 내용
인건비	월 209시간 개근 시 2,338,292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 (11.47%)
운영비	1인당 월 20만원
멘토수당	1인당 월 15만원

※ 일자리창조형 인턴의 경우,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1. 참여기업이 참여청년·멘토에게 인건비와 멘토수당을 먼저 지급
2.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에 증빙자료 제출(익월 5일 이내)
3. 운영기관이 증빙자료 검토 후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익월 20일 이내)

Q. 출석률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네,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출석률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지원금액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20만원	15만원
70% 이상 ~ 90% 미만 출석		13만원
60% 이상 ~ 70% 미만 출석	16만원	10만원
50% 이상 ~ 60% 미만 출석		9만원
40% 이상 ~ 50% 미만 출석	12만원	7만원
20% 이상 ~ 40% 미만 출석		6만원
20% 미만 출석	미지급	미지급

※ 휴일·공가는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5. 참여청년 관련

Q. 참여청년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 (연령) 2026.1.1.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1.1.~2007.1.1. 출생자)
- (고용)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4대보험 미가입자)
- (지역)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충청남도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필요)

Q. 참여청년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단,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해소된 경우 가능)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2.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3.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4.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6.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Q.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절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Q. 기존 직원을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로 중인 자는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Q. 대표자의 가족을 참여청년으로 고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6. 근로조건 및 운영

Q.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근무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1시간)
- 연장근로 : 주 12시간 이내 (참여청년 합의 필요)
- 4대보험 : 의무가입

Q. 연장(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참여청년의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하며,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연장·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업과 합의하여 시간조정(08:00~19:00 범위) 및 주말 운영 가능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50/100을 가산 지급되며, 합의된 운영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Q. 참여청년과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체결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은 승인된 참여기업 운영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업과 청년 간 합의 후 운영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참여청년에게 일경험과 무관한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일경험과 무관한 업무(정치활동, 종교활동, 사적 활동 등 동원)를 수행시킬 수 없습니다.

Q. 참여청년을 다른 기관에 파견하거나 도급 형태로 활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을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며, 근로자파견·인력공급·도급 등의 방식으로 타 기관의 상시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Q. 멘토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네,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진로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Q. 멘토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근로자
-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
- 관련 경력 1년 이상

Q. 멘토 1명이 몇 명의 참여청년을 담당할 수 있나요?

멘토 1인당 참여청년 배정인원은 **최대 4명**입니다.

Q. 멘토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일경험 기간 동안 참여청년에게 수시 멘토링 제공
-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정기 면담 실시
- 면담일지 작성해 운영기관에 제출

Q. 전담인력은 별도로 지정해야 하나요?

네, 참여기업은 일경험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담인력이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멘토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Q. 참여청년에게 타 기관의 일을 지시할 수 있나요?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을 직접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인력공급·도급 등의 방식으로 타 기관의 상시 업무수행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7. 휴가 및 휴일

Q. 참여청년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나요?

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반일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Q. 경조사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휴가일수	대상
결혼	5일	본인
	1일	자녀, 형제·자매 결혼
사망	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출산	10일	본인 및 배우자

Q. 병가는 부여되나요?

- 업무상 재해: 유급 병가
- 업무 외 부상·질병: 15일의 무급 병가 부여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 7일 이상 연속 사용 또는 연간 누계 6일 초과 시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제출

Q. 취업시험이나 면접을 위한 휴가가 있나요?

취업시험, 면접, 자격증 시험 응시 시 ****특별휴가(유급)****가 부여됩니다.

수험표 등 응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당일 부여되며, 1개월마다 1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 합격·불합격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시험만 적용됩니다.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 미적용)

Q. 재해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한가요?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참여청년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일의 유급휴가 부여됩니다.

Q. 공가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령상 의무 이행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는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을 받는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8. 참여청년 직무교육

Q. 직무교육은 필수인가요?

네, 참여청년은 반드시 직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미수료 시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Q. 직무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총 **20시간**이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1차 교육 일정은 7. 13.(월) 오후 1시 30분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자세히 안내 예정)

Q. 직무교육 수료기준은 무엇인가요?

교육 시간의 **90% 이상** 출석해야 수료 가능합니다.

9. 심사

Q.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참여기업 규모	전년도 기준 매출액, 상시고용인원	25점
직무설계 적정성	참여청년의 수행 직무 및 역할 구체성, 적정 난이도, 단순·반복 업무 여부 등	25점
지원 및 관리체계	전담인력·멘토 지정, 안정적 근무환경, 기본 인프라 확보 여부	25점
청년 성장 및 진로 연계성	직무역량 향상 기여도, 취업·진로 연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연계성	25점
가점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5점),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 (5점)	10점

Q.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햇빛소득마을 등 에너지 통합돌봄 기타 국책사업 연계): 5점
-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 5점

Q. 선정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참여기업 선정 후 **개별 연락**으로 안내됩니다.

10. 중도탈락 및 참여중단

Q. 참여청년이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탈락 처리됩니다.

1.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준)
2.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도 포기를 신청한 경우
3. 체포·구금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
5. 반복적인 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팀 활동 거부, 다른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정상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6. 참여기업의 사업중단·폐업 등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7. 질병·사고·재난 등 참여청년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인한 중도탈락

Q. 참여청년이 중도탈락하면 추가 채용이 가능한가요?

결원 발생 시 수시공고 또는 예비 순번 활용 등을 통해 추가 모집·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 일경험 기간이 20% 이하인 경우 추가 모집·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참여기업의 참여가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를 참여청년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3. 참여기업의 폐업,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회적 물의(괴롭힘, 성희롱, 산업재해 등) 등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4. 운영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11. 기타

Q.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참여청년은 어떻게 채용하나요?

운영기관이 고용24를 통해 참여청년 모집을 진행하며, 참여기업은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청년을 공정하게 선발하되, 면접 과정에서 청년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Q. 수료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의 90% 이상 출석해야 수료됩니다.

※ 단, 총 공가 인정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면 미수료 처리됩니다.

Q. 수료하면 어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은 고용24를 통해 수료증 및 이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아산YMCA (041-546-9877)
- 남부권(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041-408-7000)